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8
----------	-----

제출년월일 : 1999. 11. .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도로를 손케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사기, 부실시공,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규정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손해자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을 경우, 징수금액의 3배를 징수토록하는 규정 삭제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